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요 구

제 목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임용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징 계 대 상 자 광주광역시 지방○○○ ○○○
(전 ○○○○과)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 ○○○은 2014. 8. 14.부터 2016. 7. 28.까지 광주광역시 ○○○
○과에서 인사업무를 처리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지방기술4급으로의 승진 임용 부적정

광주광역시는 2015년 10명(상반기 7명, 하반기 3명), 2016년 8명(상반기 3명,
하반기 5명), 2017년 11명(상반기 6명, 하반기 5명)의 공무원을 지방○○○○○으로
진 임용하였으며, 자세한 직렬별 승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광주광역시 ○○직 4급 승진현황

<단위 :명>

연 도		승진/ 현원	계	공업 직렬	시설 직렬	녹지 직렬	농업 직렬	수의 직렬	간호 직렬	환경 직렬	방송 통신	보건 직렬	의무 직렬
2017	상반기	4급 승진	6	1	3	1		1					
		승진 후보자	19	5	11	2		1					
	하반기	4급 승진	5		4					1			
		승진 후보자	11		10					1			
2016	상반기	4급 승진	3		2				1				
		승진 후보자	12		11				1				
	하반기	4급 승진	5		4					1			
		승진 후보자	14		12					2			
2015	상반기	4급 승진	7		4	1	1	1					
		승진 후보자	22		16	3	2	1					
	하반기	4급 승진	3		3								
		승진 후보자	11		11								

본 건에 대한 승진임용 방법 및 절차를 감사한 결과 ① 승진대상 직렬의 자의적 선정과 인사위원회의 부실운영으로 불공정한 승진심사, ② 승진심사 전 승진후보자에 대한 시장 사전 면담제 운영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인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한 사례를 발견하였다.

가. 승진대상 직렬 및 인원의 자의적 선정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의 4급 승진의 경우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승진임용 시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의결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 결원에 따른 승진대상 직렬 및 인원은 해

당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위 관서에서는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계획(안)’(○○○○과-000, 2015. 00. 시장 결재)을 수립하여, 4급으로의 승진요인은 아래의 [표2]와 같이 시설(지적·건축) 및 녹지직렬에서 발생하였으되 승진대상 직렬은 시설5급(토목·건축·지적), 공업5급(기계·전기·화공), 녹지5급, 보건·간호5급, 환경5급, 농업수의5급, 방송통신5급 등 기술직군의 모든 직렬이 승진 가능한 것으로 하여, 해당 결원과 관련이 없는 ○○직렬에 대해 “소수직렬 사기제고 및 장기근무자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시장방침을 받아 동 직렬을 승진대상으로 결정하였다⁹⁾.

[표2] 2016년 상반기 ○○서기관으로의 승진 요인

승진예정 직급	승진 요인
○○4급(3명)	- 연쇄승진 : 1명(3급 승진) - 공로연수 : 2명(○○○-토목, ○○○-녹지) - 전 출 : 1명(○○○-건축) - 과 원 : △1명(조직개편)

그 결과로 2016. 1. 5.(인사위-4) 개최된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직렬의 ○○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여 2016. 2. 15. 승진 임용됨에 따라 연쇄적으로 ○○5급 승진자로는 ○○○이 2016. 3. 15.에, 간호6급 승진자로는 ○○○이 2016. 1. 16.에 각각 승진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렬이 환경직렬보다 장기근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9)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표3] 직렬별 선순위 승진후보자 현직급(5급) 근무연수 비교표

<단위 : 연, 월>

순 위	시설5급			공업5급			환경 5급	녹지 5급	보건· 간호 5급	농업· 수의 5급	방송 통신 5급
	토목	건축	지적	기계	전기	화공					
1	12.11 ○○○	6.2 ○○○	3.1 ○○○	6.4 ○○	4.1 ○○○	2.8 ○○○	8.1 ○○○	6.3 ○○○	9.7 ○○○	5.1 ○○○	8.1 ○○○
2	6.1 ○○○	5.6 ○○	2.8 ○○	6.11 ○○○	4.10 ○○○	1.3 ○○○	12.9 ○○○	3.1 ○○○	6.8 ○○○	4.7 ○○○	2.8 ○○○
3	6.1 ○○○	4.4 ○○○	1.5 ○○○	6.11 ○○○			4.11 ○○○			3.8 ○○○	
4	5.6 ○○○	5.9 ○○○									

2)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17년 상반기 정기승진 계획’(○○○○과-30705, 2016. 12. 19.)을 수립하면서, 기술4급으로의 결원은 시설직렬(토목), 수의직렬 및 방송통신 직렬에서 발생하였으나, 「광주광역시 정원배정 규정」상 기술4급으로의 승진은 시설5급(토목·건축·지적), 공업5급(기계·전기·화공), 녹지5급, 보건·간호5급, 환경5급, 농업·수의5급, 방송통신 5급에서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실제 결원 발생과 관련이 없는 ○○직렬과 ○○직렬을 승진대상 직렬로 포함시킨 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 방침에 따라 해당 승진 인원을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으로 배정하였다.¹⁰⁾

[표4] 2017년 상반기 기술서기관으로의 승진 요인

10)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승진예정 직급	승진 요인
○○4급(6명)	- 연쇄승진 : 1명(3급 승진) - 결 원 : 2명 - 공로연수 : 3명(○○○-시설/토목, ○○○-수의, ○○○-방송통신) - 중앙교육 : 1명(토목) - 복수조정 : 1명(행정→기술 . ○○○○사업소장) - 복수조정 : △2명(기술→행정 / ○○○○담당관, ○○○○○○과장)

위 관서는 결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렬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이유를, 기술직의 경우 4급부터 ‘기술서기관’으로 통일되며 ○○직렬의 경우 타 직렬에 비해 장기 근무자이면서도 소수직렬로서 승진 임용 시마다 소외된 점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래 [표5]에서 보듯이 직렬별 선순위 승진후보자의 현직급 근무연수를 비교해 보면, 환경과 방송통신 직렬의 승진후보자들이 ○○직렬을 포함한 타 직렬 승진후보자보다 장기 근무자로 이러한 주장은 맞지 않다.

[표5] 2017년 상반기 직렬별 선순위 승진후보자 현직급(5급) 근무연수 비교

<단위: 연, 월>

순 위	시설5급			공업5급			환경 5급	녹지 5급	보건· 간호 5급	농업· 수의 5급	방송통 신 5급
	토목	건축	지적	기계	전기	화공					
1	7.4 ○○○			7.4 ○○			9.1 ○○○	7.2 ○○○	7.8 ○○○	4.9 ○○○	9.1 ○○○
2	5.0 ○○○			7.11 ○○○				4.2 ○○○		4.9 ○○○	
3		4.8 ○○○		7.11 ○○○							
4		4.9 ○○			5.10 ○○○						

또한 승진 임용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사항이므로 결원직위 및 승진인원, 해당직위의 직무성격, 승진직렬 선정 배경,

승진심사 시 고려요인 등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친 후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과정 없이 단체장 임의로 승진대상 직렬과 인원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2017. 1. 6.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상정된 기술4급(토목, 건축, 녹지, 수의, 공업) 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해서만 심의함에 따라 ○○직렬의 경우 ○○○이 2017. 2. 13. 지방○○4급으로 승진되자 연쇄적으로 지방○○5급 승진자로는 2017. 4. 17에 ○○○이, 지방○○6급 승진자로는 ○○○, ○○○이 2017. 1. 24. 각각 승진하였으며,

○○직렬에서 지방○○4급 승진자로는 ○○(○○)이 승진함에 따라 지방○○5급으로 ○○○(○○), ○○○(○○)이 2017. 4. 17. 승진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설·수의·방송통신 직렬에서 발생한 결원을 임의로 시설·녹지·수의·공업직렬에 배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해당 직렬의 승진후보자 명부만 상정·심의함에 따라, 방송통신 직렬의 승진 후보자¹¹⁾의 경우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위 관서에서는 ‘2017년 하반기 정기승진 계획’(○○○○과-15797, 2017. 6. 26.)을 수립하면서, 기술4급으로의 결원은 시설직렬(토목·건축)과 녹지직렬에서 발생하였으나, 「광주광역시 정원배정 규정」 상 기술4급으로의 승진은 시설5급(토목·건축·지적), 공업5급(기계·전기·화공), 녹지5급, 보건·간호5급, 환경5급, 농업·수의5급, 방송통신 5급에서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녹지직렬과 방송통

11) 2017. 1. 3. 조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상 방송통신 직렬의 승진서열 1번은 ○○○임.

신 직렬의 경우 대상자가 없다는 사유로 제외하면서 실제 결원 발생과 관련이 없는 환경직렬을 승진대상 직렬로 포함시킨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방침에 따라 해당 승진요인을 토목 1명, 건축 3명, 환경 1명으로 결정하였다¹²⁾.

[표6] 2017년 하반기 기술서기관으로의 승진 요인

승진예정 직급	승진요인
○○4급(5명)	- 연쇄승진 : 1명 - 공로연수 : 1명(○○○○○○○○소장-건축) - 공석직위 : 2명(○○○○과장-토목, ○○○○○○○○단장-건축) - 명예퇴직 : 3명(○○○○○○○○소장-토목, ○○○○○과장-건축, ○○○○○과장-녹지) - 신규파견 : 1명, 복수조정 : 명 - 감소요인 : △4명(복수조정, 직위해제자 공석유지 등)

그런데 승진 임용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사항이므로 결원직위 및 승진인원, 해당직위의 직무성격, 승진직렬선정 배경, 승진심사 시 고려요인 등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친 후 승진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사전 의결 과정 없이 단체장 임의로 승진대상 직렬과 인원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2017. 7. 5.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상정된 기술4급(토목, 건축, 환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해서만 심의함에 따라 환경직렬의 경우 ○○○가 2017. 7. 12. 지방○○4급으로 승진되자 연쇄적으로 지방○○5급 승진자로는 ○○○, ○○○이 2017. 7. 5. 승진의결 되고, 지방○○6급 승진자로는 ○○○, ○○○, ○○○, ○○○이 2017. 7. 21. 각각 승진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관서에서는 기술서기관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대상 직렬과 인원을 단체장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

12)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는 승진대상 직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승진심사를 진행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하였다.

2. 5급 승진예정인원 과다 산정 및 승진대상직류 부적정 운영

「지방공무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결원발생을 전제를 하고 있으며, 승진심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결원에 따른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의 배수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6급에서의 5급 승진예정 인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연간퇴직률 및 증원예상인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은 ‘결원 + 퇴직인원 - 신규임용예정인원’의 산식을 기본으로 산정하고,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결원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퇴직인원은 해당 기간 중 정년퇴직 예정인원(공로연수 확정자 포함), 명예퇴직 예정인원 및 기타 최근 3년 평균 면직인원(의원면직, 직권면직, 파면·해임 및 기타 당연퇴직 등 포함)으로 하되, 퇴직인원으로 포함한 공로연수자는 퇴직할 때 재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영 제38조의5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기준의 사전의결과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을 관장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5급으로의 승진예정 인원 산정 및 승진대상 직류를 아래 [표1]과 같이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표1] 5급으로의 승진예정 인원 산정 위반 사례

<단위 : 명>

연도	직급	직렬	실제 결원	승진인원	초과 승진인원	승진직류
계					20명	
2016년 상반기	공업5급	공업	0	3	3	기계 1, 전기 1, 화공 1
	시설5급	시설	3	5	2	토목 3, 건축 2
	행정5급	행정	13	15	2	행정 14, 전산 1
2016년 하반기	공업5급	공업	1	3	2	기계 1, 전기 1, 화공 1
	시설5급	시설	1	4	3	토목 2, 건축 1, 지적 1
	행정5급	행정	10	12	2	행정 11, 전산 1
2017년 상반기	시설5급	시설	7	8	1	토목 6, 건축 2
	행정5급	행정	14	16	2	행정 14, 전산 1, 세무 1
2017년 하반기	행정5급	행정	20	21	1	행정 20, 전산 1
	시설5급	시설	5	7	2	토목 3, 건축 3, 지적 1

가. 2016년 상반기 5급 승진심사 관련

위 관서에서는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계획안’(○○○○과-000, 2015. 00.)을 수립하고 지방공업5급 결원 3명, 지방시설5급 결원 5명, 지방행정5급 결원 15명으로 예상하여 승진예상인원을 산정하였다.

1) 지방공업5급으로의 과다 승진(3명)

지방공업5급 결원으로 산정한 3명은 2016. 7. 21. 공로연수 후 2017. 6. 30. 정년퇴직 예정인 지방○○5급 ○○○(○○), 지방○○5급 ○○○(○○), 지방○○5급 ○○○(○○)에 대한 것으로서 공로연수일 이후 결원이 발생하므로 2016년 하반기 승진심사를 위한 예상결원으로 해야 하였으나, 2016년 상반기 승진심사를 위한 예상결원으로 하였고, 또한 위 3인을 2016년 하반기 지방공업5급 승진심사에도 예상결원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였다.(○○○○과-00000, 2016. 0. 00.)

그 결과 2016년 상반기 지방공업5급 예상 결원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3명을 예상결원으로 산정하여 2016. 1. 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위원장 ○○) 상정·심의하였으¹³⁾며, 공업직렬 중 기계·전기·화공 직류에 대해 시장 방침에 따라 승진예정 인원을 1명씩 배정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상 1번인 ○○○, ○○○, ○○○을 2016. 8. 9.에 각각 승진임용 하였다.

2) 지방시설5급으로의 과다 승진(2명)

또한 지방시설5급의 경우 예상결원으로 5명을 산정하였으나 감사결과 실제 예상결원은 3명으로 부당하게 2명을 초과 산정하였는 바, 지방기술4급 승진에 따른 연쇄승진 요인 2명과, 2016. 1. 1. 시행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 3명, 2016 하반기 명예퇴직인원 3명을 합해 총 8명의 결원요인이 있었으나, 과전복귀자 3명과 미보직자 2명을 합해 5명의 감소요인이 있으므로 실제 예상결원은 3명¹⁴⁾이었다.

13) 인사위원회 출석위원 : 8명(내부위원 - 위원장, ○○○, ○○○ / 외부위원 - ○○○, ○○○, ○○○, ○○○, ○○○)

14) ○ 증원인력 3명 : ○○○○과 지적재조사(○○ 1명), ○○○○과 ○○○○○(○○ 1명), ○○○○○○단 ○○사무관 배치(○○·○○5급)

위 ‘가’ 사항의 지방공업5급의 사례와 같이 2016. 7. 21. 공로연수 후 2017. 6. 30. 정년퇴직 예정인 지방○○○○○ ○○○(○○), 지방○○○○○관 ○○○(○○), 지방○○○○○ ○○○(○○)에 대해서는 공로연수일 후에 결원이 발생하므로 상반기 중에는 결원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여 잘못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예상결원을 5명으로 산정하고 2016. 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위원장 ○○)¹⁵⁾ 지방시설5급 승진심사에 상정·심의하면서 시장 방침으로 시설직렬 중 토목직류에 3명, 건축직류에 2명을 배정한 후 직류별 승진후보자 명부서열대로 승진 임용함으로써 결국 2명이 초과 승진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하여야 하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8항에 따라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승진임용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승진후보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장 방침에 따라 시설직렬의 승진예정인원을 토목과 건축직류에 배정함에 따라 지적직류의 승진범위에 속하는 자들¹⁶⁾의 승진심사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지방행정5급으로의 과다 승진(2명)

○ 명예퇴직인력 3명 : 지방○○사무관(○○) ○○○(58.0.00 / 2016. 11. 30. 명예퇴직), 지방○○사무관(○○) ○○○(57.00.0 / 2016. 12. 16. 명예퇴직), 지방○○사무관(○○) ○○○(57.0.00./ 2016. 12. 16. 명예퇴직)

15) 인사위원회 출석위원 : 8명(내부위원 - 위원장, ○○○, ○○○ / 외부위원 - ○○○, ○○○, ○○○, ○○○, ○○○)

16) 2016. 1. 3. 조정된 ○○직류 승진후보자 명부 :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지방행정5급의 경우에도 2016년 상반기 승진을 위한 예상결원으로 2명을 초과하여 15명(행정14, 전산1)으로 산정하였다.

결원으로 본 파견자 3명 중 1명은 별도정원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파견한 경우로 결원보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했어야 하며,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도 3명(2016. 12. 16. 명예퇴직한 ○○○ 지방○○○○○, 2016. 12. 16. 명예퇴직한 ○○○ 지방○○○○○, 2016. 9. 12. 의원면직한 ○○○ 지방○○○○○)임에도 1명을 초과하여 4명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5급으로의 예상결원은 아래와 같이 15명(행정 14명, 전산 1명)이 아닌 13명인데도, 2016. 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위원장 ○○)¹⁷⁾ 15명을 승진의결 하였다.

또한 시장 방침에 따라 행정직렬의 승진예정인원을 사전에 일반행정과 전산직류에 배정함에 따라, 세무직류의 승진범위에 속하는 자들¹⁸⁾의 승진심사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2016년 하반기 5급 승진심사 관련

위 관서에서는 2016년 하반기에도 ‘4급 이하 정기인사 시행계획안’¹⁹⁾(○○○○과-16529, 2016. 7. 22.)에 따라 지방공업5급 3명, 지방시설5급 4명, 지방행정5급 12명을 예상결원으로 보아 승진심사를 진행하였다.

1) 지방공업5급으로의 파다 승진(2명)

17) 출석위원 : 8명(내부위원 - 위원장, ○○○, ○○○ / 외부위원 - ○○○, ○○○, ○○○, ○○○, ○○○)

18) 2016. 1. 3. 조정된 ○○직류 승진후보자 명부 : 1번 ○○○, 2번 ○○○, 3번 ○○○ 4번 ○○○

19)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위 관서에서는 지방공업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을 3명으로 책정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예상결원, 보직 미부여자를 고려할 때 승진예정인원을 1명으로 산정하여야 했다. 아울러 공로연수자 ○○○, ○○○, ○○○의 결원은 2016년 상반기에 이미 계상하여 승진심사를 하였으므로 보직 미부여자가 3명이 나타난 점도 고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6. 7.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위원장 ○○)20) 지방공업5급으로의 승진의결자로 ○○○○ 직류에 ○○○, ○○○○ 직류에 ○○○, ○○○○ 직류에 ○○○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지방공업5급으로의 실제 승진가능 인원은 1명인데도 예상결원을 3명으로 잘못 산정하여 2명이 추가로 승진하였다.

2) 지방시설5급으로의 과다 승진(3명)

위 관서에서는 지방시설5급의 경우 승진예정인원을 4명으로 책정하였으나 4급 승진자, 예상결원 및 보직 미부여자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한 결과, 1명의 승진요인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2016. 상반기에 공로연수자 3명 ○○○, ○○○, ○○○의 결원을 포함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한 결과, 미보직자가 3명 발생한 점도 고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6. 7.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위원장 ○○)21) 승진예상인원 4명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방침에 따라 시설직렬 중 토목직류에 2명, 건축직류에 1명, 지적직류에 1명을 배정하여 승진 임용함으로써 3명이 추가로 승진하였다.

20) 출석위원 : 7명(내부위원-위원장, ○○, ○○○ / 외부위원-○○○, ○○○, ○○○, ○○○)

21) 인사위원회 출석위원 : 7명(내부위원 - 위원장, ○○, ○○○ / 외부위원 - ○○○, ○○○, ○○○, ○○○)

3) 지방행정5급으로의 과다 승진(2명)

지방행정 5급의 경우 예상결원을 12명으로 보아 승진예정인원을 12명으로 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결원으로 인한 승진인원은 10명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2016. 7. 22. 인사위원회에서(위원장 ○○)²²⁾ 잘못 산정된 승진예상인원 12명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 방침에 따라 행정직류에 11명, 전산직류에 1명을 배정한 후 승진 임용함에 따라 2명이 추가로 승진하였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 방침으로 행정직렬 승진가능인원을 사전에 행정과 전산직류에 배정함에 따라 세무직류의 승진범위에 속하는 자들²³⁾의 승진심사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2017년 상반기 5급 승진관련

‘광주광역시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계획안’(○○○○과-00000, 2016. 00. 00.)을 보면 지방시설5급 8명, 지방행정 5급 12명을 예상결원으로 보아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였다²⁴⁾.

1) 지방시설5급으로의 과다 승진(1명)

지방시설 5급의 경우 예상결원을 8명으로 보았으나,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 시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결원에서 제외해야 하며, 퇴직인원은 해당 기간 중 정년퇴직 예정인원(공로연수 확정자 포함), 명예퇴직 예정인원 및 기타 최근 3년 평균 면직인원(의원면직, 직권면직, 파면·해임 및 기타

22) 출석위원 : 7명(내부위원 - 위원장, ○○, ○○○ / 외부위원 - ○○○, ○○○, ○○○, ○○○)

23) 2016. 7. 19. 조정된 ○○직류 승진후보자 명부 :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24)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당연퇴직 등 포함)으로 산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되어 있으므로 7명으로 예상결원을 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잘못 산정된 예상결원 8명에 대하여 2017. 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위원장 ○○○)²⁵⁾ ○○직류 6명(○○○, ○○, ○○○, ○○○, ○○○, ○○○)과 ○○직류 2명(○○○, ○○○)을 지방○○5급 승진대상자로 각각 의결하여 1명이 추가 승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아닌 시장 방침에 따라 시설직렬 승진가능인원을 사전에 토목과 건축직류에 배정함에 따라, 지적직류의 승진범위에 속하는 자들²⁶⁾의 승진심사 기회가 완전히 누락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지방행정5급으로의 과다 승진(2명)

지방행정5급의 경우 ‘2017년 상반기 5급(행정+기술) 인사조정안’(○○○○과-1922, 2017. 1. 23.)을 보면 16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승진예정 인원을 산정²⁷⁾하였으나 감사 결과 14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2017. 1. 6. 인사위원회에서(위원장 ○○○)²⁸⁾ 지방행정5급으로 예상결원 16명에 대해 시장 방침을 거쳐 행정직류 14명, 세무직류 1명, 전산직류 1명을 각각 승진 임용함에 따라 결국 2명이 초과하여 승진하였다.

라. 2017년 하반기 5급 승진관련

‘광주광역시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행계획안’(○○○○과-00000, 2017. 0.

25) 출석위원 : 7명(내부위원 - 위원장, ○○○, ○○ / 외부위원 - ○○○, ○○○, ○○○, ○○○)

26) 2017. 1. 3. 조정된 ○○직류 승진후보자 명부 : 1번 ○○, 2번 ○○○, 3번 ○○○, 4번 ○○○

27)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28) 출석위원 : 7명(내부위원 - 위원장, ○○, ○○○ / 외부위원 - ○○○, ○○○, ○○○, ○○○)

00.)²⁹⁾을 보면 지방행정5급 21명, 지방시설 7명을 예상결원으로 하여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였다.

1) 지방행정5급으로의 과다 승진(1명)

지방행정5급의 경우 예상결원으로 인한 승진예정 인원을 21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예상결원은 20명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잘못 산정된 승진예상인원 21명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 방침에 따라 행정직류에 20명, 전산직류에 1명을 각각 배정한 후 승진 의결함에 따라 결국 1명이 추가로 승진하였다.

또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 방침에 따라 행정직렬 승진가능인원을 사전에 행정과 전산직류에 배정함에 따라 세무직류의 승진범위에 속하는 자들³⁰⁾의 승진심사 기회가 완전히 누락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지방시설5급으로의 과다 승진(2명)

지방시설 5급의 경우 예상결원은 7명으로 하여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였으나, 예상결원은 5명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2017. 7. 5. 인사위원회에서(위원장 ○○○)³¹⁾ 잘못 산정된 승진예상인원 7명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 방침에 따라 토목직류에 3명, 건축직류에 3명, 지적직류에 1명을 각각 배정한 후 승진 의결함으로써 2명이 추가로 승진하였다.

이상과 같이 위 관서에서는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을 잘못하여 과다

29)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30) 2017. 7. 4. 조정된 승진후보자 명부(○○직류) :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6번 ○○○

31) 출석위원 : 8명(내부위원 - 위원장, ○○○, ○○ / 외부위원 - ○○○, ○○○, ○○○, ○○○, ○○○)

하게 승진 임용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승진기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사항임에도 이를 누락하고 단체장이 임의로 지정함에 따라, 일부직류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승진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승진임용 업무 처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 지방○○관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징계] 위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4급 승진의 경우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달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통해 승진대상 직렬과 인원을 정하고

②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시 과다하게 승진 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맞도록 승진인원을 산정 하시기 바라며

③ 인사위원회의 승진 사전심사 의결 권한을 침해하거나 승진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존의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